



제 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지역 연고 프로이스포츠단 출자·출연 근거 신설 등 >

■ 김성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068호)

2024. 8.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김원모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지역 연고 프로이스포츠단 출자·출연 근거 신설	3
2. 법 목적에 이스포츠 분야의 인권 보호 추가	7
3. 정부의 국제경기대회 정식종목 채택 노력 명시	9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김성원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2024. 6. 27.

다. 회 부 일: 2024. 6. 2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의 문화와 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국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시설 조성, 단체 설립·운영 및 이스포츠 대회 개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게임 산업의 발전 및 이스포츠 진흥 정책 등에 따라 이스포츠 산업이 확장되며 이스포츠 선수 등 이스포츠인 또한 증가하고 있으나 이스포츠인 분야의 인권에 관한 규정이 미비한 상황으로, 현행법에 이스포츠 분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규정할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최근에는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이스포츠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는 등 점차 스포츠로서의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더 나아가

각종 국제경기대회에서 정식종목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이스포츠 육성·지원이 필요함.

또한, 「스포츠산업 진흥법」에서는 지역에 연고를 둔 프로스포츠를 육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프로스포츠단 창단에 출자·출연 또는 사업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통하여 지역 기반의 프로스포츠가 활성화되고 있음. 이를 참조하여 이스포츠의 경우에도 지역 연고 기반의 전문 이스포츠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의 목적에 이스포츠 분야의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건전한 성장 및 활성화를 도모, 이스포츠가 국제경기대회의 정식종목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기반 조성, 지방자치단체나 지역 내 공공기관이 지역 기반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프로이스포츠단 창단에 출자·출연하거나 사업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 및 안 제5조제2항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지역 연고 프로이스포츠단 출자·출연 근거 신설

가. 개정안의 요지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지역 연고 프로이스포츠단 창단에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지방 이스포츠의 진흥) (생략) <u><신 설></u>	제5조(지방 이스포츠의 진흥)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지역 기반의 전문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 연고 프로이스포츠단 창단에 출자 또는 출연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지역 연고 프로이스포츠단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나. 검토의견

「지방재정법」 제18조1)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등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 또는 출연을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²⁾

이에 개정안은 「스포츠산업 진흥법」³⁾의 입법례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등이 프로이스포츠단에 출자·출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프로이스포츠에 있어서도 일반 프로스포츠의 경우와 같은 ‘지역연고제’⁴⁾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등의 재정적 지원을 통해 프로이스포츠단의 창단·운영 활성화를 기대해 볼 수 있고 나아가 지역 이스포츠 산업의 육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입법취지의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봄.

-
- 1)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2) 한편, 공공기관 중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출연·출자기관을 설립하거나 다른 법인에 출연·출자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함(「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제1항).
- 3)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17조(프로스포츠의 육성) ②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프로스포츠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프로스포츠단 창단에 출자 또는 출연할 수 있으며, 프로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프로스포츠단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4) 스포츠 구단 등이 특정 지역을 연고지로 하여 다른 구단과 홈&어웨이 방식으로 경기를 치르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마케팅 활동 등을 통해 구단을 운영하며 지역 팬덤을 형성하는 제도로써, 현재 중국 “리그 오브 레전드 프로리그(LPL)”에서 이를 실시하고 있으며, 미국 “오버워치 리그(Overwatch League)”의 경우 태평양 동·서부 및 대서양 동·서부 등으로 나누어 세계 지역 연고제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2021년 부산시가 “샌드박스 게이밍”과 연고지 협약을 체결하여 “리브 샌드박스” 구단이 3년 간 부산시를 연고로 활동하기로 한 바 있고, 인천시의 경우 “SAGe스포츠”와 협약을 체결하여 “SAG 인천 게임단”을 창단하였으며, 성남시는 “임프로브컬처스”와 협약을 체결하여 “성남 제노알파 게임단”을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 최근 들어서는 2022년 대전시가 “(주)후에고”와 협약을 체결하고 “대전 하나 CNJ”를 출범시켰으나, 이들 모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 등을 통해 정식으로 지역연고 프로이스포츠단을 창단한 지역연고제의 사례라기보다 이른바 ‘네이밍 스폰서(naming sponsorship) 계약’ 등의 형식으로 협약을 맺고 일정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라고 할 것임.

다만, 프로이스포츠의 지역연고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이 적극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여러 우려 사항을 제기하는 의견이 모두 존재하는 상황이므로,⁵⁾ 개정안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지역연고제 도입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먼저, 지역연고제의 적극 추진이 필요하다는 측에서는 지역연고제가 지역 이스포츠의 활성화는 물론 우리나라 이스포츠 산업의 육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프로야구나 프로축구와 같이 현재 지역연고제를 기반으로 하는 스포츠의 경우 연고지에서 유소년 선수 육성 시스템이나 아카데미 등이 운영되고 있고, 전용구장 구축·활용 및 주변 상권 활성화 등을 통해 지역경제에도 기여하고 있으며, 나아가 이러한 지역연고 프로구단 운영을 기초로 하여 해당 스포츠 자체의 진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스포츠의 경우에도 지역연고제를 바탕으로 이러한 산업 모델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또한, 현재 수도권에 편중된 이스포츠 경기가 지방에서 더욱 많이 개최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이스포츠 문화 향유 기회를 늘릴 필요가 있다는 점도 함께 주장되고 있음.⁶⁾

5) 이하에서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실시한 “2021 이스포츠 정책연구”의 내용과 2022. 2. 실시된 “e 스포츠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역 연고제 도입 방안 정책토론회”(하태경·김승수·허은아 의원 공동주최) 등의 내용을 참조하여 정리하였음.

6) 참고로,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전·광주·부산·경남(진주)에 이스포츠 경기장을 건립한 바 있고, 현재 충남 아산에도 경기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음. 세부 현황은 [참고] 자료 참조

반면, 지역연고제를 우려하는 측에서는 우리나라 이스포츠가 처음부터 지역연고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 않아 특정 팀이나 특정 선수에 대한 팬층이 이미 전국 단위로 형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는 지역연고제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제도를 통해 의도한 정책 효과를 담보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스포츠와 달리 이스포츠는 온라인으로 경기가 치러질 수 있다는 특성이 있으므로 지역연고제 실시로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아마추어 기반이 열악한 상황에서 지역에 프로게임단을 유치한다고 하여 곧바로 지역 이스포츠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음.⁷⁾

한편, 최근 프로축구의 시민구단 운영과 관련하여 무리한 지역 구단 창단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 문제, 구단 운영자금 확보의 어려움 및 열악한 제반 환경에 따른 고질적인 운영난 등이 문제가 되고 있는바, 개정안에 따라 프로이스포츠단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도의 행정적 장치 마련 등이 병행될 필요가 있겠음.

7) 참고로, 한국이스포츠협회도 개정안은 지역 이스포츠 활성화를 통한 지역문화 활성화와 지역 간 불균형 해소에 매우 긍정적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면서도,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각 여건에 따라 아마추어팀부터 실업팀·프로팀까지 다양한 단계의 이스포츠팀을 지원하여 풀뿌리 이스포츠 지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스포츠단 지원 대상을 ‘프로’에서 ‘프로 및 아마추어’ 팀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2. 법 목적에 이스포츠 분야의 인권 보호 추가

가. 개정안의 요지

개정안은 법 목적에 ‘이스포츠 분야 인권 보호’를 추가하려는 것임.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의 문화와 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u>도모하고</u> 이스포츠를 통하여 국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u>도모하고, 이스포츠 분야의 인권을 보호하며,</u> ----- ----- -----.

나. 검토의견

지난 2020년 고(故) 최숙현 선수 사건⁸⁾ 등을 계기로 체육계의 인권 문제가 크게 대두되었는바, 이에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신고자·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스포츠윤리센터의 기능과 권한

8) 고 최숙현 선수는 2015년부터 4차례 국가대표로 선발되고 2017년 전국 체전 철인3종경기에 출전한 유망주였으나, 2019년까지 소속됐던 경주시청팀의 감독과 팀닥터로부터 구타와 폭언에 시달렸으며, 팀 선배 2명도 이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음. 최 선수는 2020년 2월 처음으로 경주시청에 가혹행위를 신고했고, 3월에는 가해자 4인을 폭행 등의 혐의로 고소했으며, 4월에는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에, 6월 22일에는 철인3종협회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각 단체의 조사·수사가 지지부진하면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난 제21대 국회에서는 체육인의 인권보호 강화 등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된 바 있음.

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체육진흥법」이 2020년 개정되어 현재 시행 중에 있음.⁹⁾

개정안은 이와 같은 취지에서 본 법에도 이스포츠 분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규정할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입법취지의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봄.

다만, 당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의 경우 스포츠 비리 발생 시 스포츠 윤리센터 신고 의무화, 스포츠윤리센터의 기능 및 권한 확대, 피신고인과 신고인의 물리적 공간 분리, 피신고인의 직위해제·직무정지 조치 등 체육인 인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장치를 함께 도입하며 법 목적에 ‘인권 보호’를 추가한 것이나, 개정안의 경우 목적 조항 개정 외에는 다른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

현행법에도 제6조제2항제3호¹⁰⁾에서 이스포츠 진흥 중·장기 기본계획에 이스포츠 관련 전문인력의 권익향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한 것 외에는 이스포츠인의 인권 보호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과 같이 법 목적만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음.

9) 시행 2021. 2. 19. [법률 제17480호, 2020. 8. 18., 일부개정]

10)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이스포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권익향상

3. 정부의 국제경기대회 정식종목 채택 노력 명시

가. 개정안의 요지

개정안은 정부로 하여금 이스포츠가 각종 국제경기대회의 정식종목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내·외 이스포츠대회를 육성·지원할 것을 규정하려는 것임.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이스포츠대회의 육성·지원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u>이스포츠대회를</u> 육성·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이스포츠대회의 육성·지원 등) ----- ----- <u>국</u> <u>· 내외 이스포츠대회를</u> -----.
제14조(국제교류 및 해외 홍보 <u>지원</u>) ①·② (생략) <u><신설></u>	제14조(국제교류 및 해외 홍보 <u>지원 등</u>)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정부는 이스포츠가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제경기대회의 정식종목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나. 검토의견

이스포츠 산업의 진흥을 위해서는 일반 스포츠와 마찬가지로 올림픽을 비롯한 각종 국제경기대회의 정식종목으로 채택되도록 하여 기존

게임 이용자의 범위를 넘어서까지 그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음.

이에 각국의 이스포츠 당국은 국제대회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고, 그 결과 이스포츠는 지난해 개최됐던 제19회 아시안게임¹¹⁾에서 처음 정식종목으로 채택되기도 하였으나, 아직까지 올림픽이나 다른 국제경기대회의 정식종목으로는 채택되지 않고 있음.

이러한 배경에서 개정안은 정부로 하여금 이스포츠가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조제1호¹²⁾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국제경기대회의 정식종목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내·외 이스포츠대회를 육성·지원할 것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이스포츠 종주국으로서 우리나라의 위상 제고 및 이스포츠 산업의 진흥을 위한 저변 확대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입법취지의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봄.

11) 지난 2018년 제18회 아시안게임(자카르타·팔렘방)에서는 리그 오브 레전드, 스타크래프트2, 하스스톤, 프로 에볼루션 사커 2018, 펜타스톰, 클래시 로얄 등 6개 게임이 시범종목으로 채택된 바 있고, 2023년 열린 제19회 아시안게임(항저우)에서는 도타2, 리그 오브 레전드, 몽삼국2,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스트리트파이터 5, 왕자영요, FC 온라인 등 7개 게임이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었음. 우리나라는 이 중 리그 오브 레전드,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스트리트파이터 5, FC 온라인 등 4개 종목에 출전하여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획득하였음.

참고로, 이 중 국내 게임사의 게임은 ‘배틀그라운드’가 유일한데, 이번 아시안게임의 종목 선정과 관련해서는 대회가 중국(항저우)에서 개최된다는 등을 이유로 세계적인 인기나 이용자 수 등이 아니라 중국 내 인기를 위주로 선정되었다는 논란이 발생한 바 있음.

12)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경기대회”란 다음 각 목의 대회를 말한다.

가. 국제올림픽위원회,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가 주관하는 올림픽대회
나. 아시아올림픽평의회, 아시아장애인올림픽위원회가 주관하는 아시아경기대회
다. 국제대학스포츠연맹이 주관하는 유니버시아드대회
라. 국제축구연맹이 주관하는 월드컵축구대회
마. 국제육상경기연맹이 주관하는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바. 국제수영연맹이 주관하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사. 그 밖에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대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회

다만, 안 제11조와 관련하여서는 현행법에 따르더라도 국내 이스포츠 대회뿐 아니라 국제 이스포츠대회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육성·지원이 가능하고, 실제로도 이미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제 이스포츠연맹이 주최하는 ‘세계 이스포츠대회’ 등을 비롯해 국제대회에 대한 지원을 실시 중¹³⁾이라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문 의 처
02)6788-5376

13) 우리 정부의 국내·외 이스포츠대회 지원 현황은 [참고] 자료 참조

참고

관련 사업 및 추진 현황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이스포츠 지역 상설 경기장 건립 사업

구분	부산 (‘20.11.18. 개관)	광주 (‘20.12.20. 개관)	대전 (‘21.9.15. 개관)	경남(진주) (‘24.5.17. 개관)	충남(아산) (‘25. 개관 예정)
사업기간	‘19.1.1. ~‘20.11.30	‘19.1.1. ~‘20.11.30	‘19.1.1. ~‘20.11.30	‘21.7.19. ~‘24.4.30.	‘23.8.1. ~‘25.11.30.
위치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672 삼정타워 15~16층	광주 남구 필문대로 309 조선대학교 해오름관	대전 유성구 대덕대로 480 첨단과학관 북관	경남 진주시 동진로 33 경상국립대학교 100주년 기념관	충남 아산시 장재리 강소특구 내 (배방읍 장재리 2135)
규모 (총면적 기준)	2,739㎡ (주경기장 330석, 보조경기장 144석)	4,290㎡ (주경기장 1,005석, 보조경기장 160석)	4,595.7㎡ (주경기장 500석, 보조경기장 50석)	약 4,933㎡ (주경기장 500석, 보조경기장 76석)	약 5,675㎡ (주경기장 500석, 보조경기장 100석)
소요예산	60억(국고 30억, 자부담 30억)	60억(국고 30억, 자부담 30억)	70억(국고 30억, 자부담 40억)	80억(국고 30억, 자부담 50억)	200억(국고 40억, 자부담 160억)

□ 이스포츠 대회 지원 현황

구분	대회명	수행 기관	일정(예정)	지역 / 장소
국 내	대통령배 아마추어 대회	한국이스포츠협회	7.6.~8.4. (지역대표선발전) 8.17.~8.18. (전국 결선) 9월~11월 (KeG 리그)	충남 아산 / 이순신 체육관 (전국 결선)
	전국 장애인 이스포츠대회	한국콘텐츠진흥원, 대한장애인체육회	7.20.~7.21.	충남 아산 / 아산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	한국콘텐츠진흥원, 국립특수교육원, 넷마블문화재단	9.3.~9.4.	서울 / 더케이호텔
	동호인 대회	한국이스포츠협회	5월~11월	전국 이스포츠 시설
	대학리그	한국이스포츠협회	9월~11월 11.23~24. (전국 결선)	부산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전국 결선)
국 제	세계 이스포츠 대회	국제이스포츠연맹	6~9월 (대륙별 예선) 11.11.~19. (글로벌 결선)	사우디아라비아 (글로벌 결선)
	한중일 이스포츠 대회	한국이스포츠협회 (올해 중국 협회 주최, 3개국 협회 공동 주관)	미정, 3국 협의 중 (9, 10월 또는 12월)	중국 (항저우 혹은 청두)